

2021년 7~8월 불법어업 지도·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1 목 표

“선(先) 지도, 후(後) 단속”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,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

2 육·해상 지도·단속 계획

1) 해 상

해역	중점 지도·단속 대상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구위반,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○ 조업 금지구역·기간 및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위반 집중단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형·연안선망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: 5.16~6.15 * 단, 인천시~전남 신안군: 7.1~7.31 - 연·근해자망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: 5.16~6.15 * 단, 인천시~전남 신안군: 7.1~7.31 ** 전남해역 뺨침대어구 세목망 사용 시 : 8.1.~8.3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해형망 조업 금지기간: 6.1~7.31 * 단, 패류양식어장 관리선이 해당 어장에서 사용 시 제외 - 연안개량안강망 조업 금지기간: 5.16~6.15 * 단, 인천시~전남 신안군: 7.1~7.31 ○ 트롤·저인망 어구사용 금지구역 침범 조업 ○ 근해채낚기 공조조업(대형트롤), 광력기준 위반 ○ 안강망·자망·통발 어구실명제 지도·단속 ○ 어구사용량 초과 적재 및 사용, 불법어구 제작·보관·유통 ○ 어린고기(포획금지기간·체장) 포획·유통·판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히, 꽃게 체장미달(6.4cm) 및 외포란 꽃게·민꽃게 ○ (2중이상 자망) 미승인 사용·적재, 제한조건 위반, 승인구역 이탈 조업 등 ○ 근해안강망 세목망* 사용 허용 10개** 어종 외 포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용금지 기간(5.16~6.15, 단, 인천, 경기, 충남, 전북, 전남 영광·신안은 2월 및 7월) * 멸치, 반지, 뱀뱀이, 뱀장어, 곤쟁이, 까나리, 베도라치, 새우류, 꿀뚜기, 주꾸미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·근해자망 뺨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해 : 인천·경기해역 중 주17) 바깥 쪽 해역과 전남해역 제외한 전국 해역 - 연안 : 인천·경기·전남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○ 연안통발 그물코 규격위반 어구 사용 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봉장어, 낙지, 새우류 : 22mm 이하, 입구둘레 길이 140mm 이상 사용금지 ○ 중국어선의 무허가 및 제한조건 위반 조업
경인 충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남해역 뺨침대 자망어구 사용 금지 ○ 조업 금지구역 위반 : 근해안강망, 근해형망, 소형선망 ○ 조업 금지기간 위반 : 연안개량안강망, 근해형망 ○ 연안선망 허가구역 이탈 조업(도계위반) 및 부속선 어구 적재 ○ 무허가 잠수기 및 스킨스쿠버 조업 ○ 각망 허가받은 구획 이탈 조업
전남 전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북해역 뺨침대 자망어구 사용 금지 ○ 조업 금지구역 위반 : 근해안강망, 근해형망, 소형선망 ○ 조업 금지기간 위반 : 연안개량안강망, 근해형망 ○ 새우포획 목적 범 외의 어구(일명 ‘사각틀방’, ‘안경방’) 불법 조업 ○ 연안선망(전남) 허가받은 조업구역(도계) 이탈 조업 ○ 낭장망 허가받은 구획 이탈 조업
특정 해역 (D어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해역 통발어선 등 무단진입 조업 ○ 백령·대청·소청도 주변어장 조업선의 조업구역 이탈 조업
EEZ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어선의 무허가 및 제한조건 위반 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자체 휴어기(5.1~9.1, 12:00)

□ 「중국 해경법」 시행 (‘21. 2. 1)

-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시 중국 해경의 승선·검사·강제 압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업 활동에 유의

<주요 내용>

- 제16조 : 해경기구는 위법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추적 및 감시 등의 조치 가능
- 제17조 : 불법 진입한 외국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·억류·강제퇴거·견인 가능
- 제18조 : 중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승선검사 실시 및 도주할 경우 요격·추적 가능
- 제46조 : 선박을 강제로 정선·퇴거·견인 시 경찰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음
- 제47조 : 외국선박이 중국해역에서 불법조업 및 승선검사 거부 시 휴대용 무기 사용 가능

* 「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」 - 해상안전수호, 범죄수사, 경찰장비와 무기 사용 등을 규정

2) 육 상

- (불법어업) 무허가, 불법어구 적재·사용 및 불법어획물 포획·채취 등
 - 업종별 규정된 어구의 규모·형태·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위반 여부
 - * 「수산업법」 제41조(무허가), 제64조의2(어구·어법), 제41조의3(혼획물)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4조(불법어구 적재), 제14조(포획·채취 제한), 제18조(비어업인 포획·채취)
- (불법유통) 불법어획물 보관·유통·판매 및 낚시 포획 어획물 거래 등
 - 포획 금지기간·체장미달 어획물의 재래시장, 도·소매업체 등 유통·판매 등
 - 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7조(불법어획물),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7조의2(낚시 포획 어획물)
- (TAC) 할당량·정지명령·어획보고·판매장소 미준수 및 조사·평가거부 등
 - 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37조(할당량), 제38조(배분량), 제40조(판매장소), 제12조(어획물 등의 조사)

3) 어선법

구분	중점 지도·단속 대상
육·해상	① 불법 증·개축 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체 주요치수(길이, 너비, 깊이)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- 상부 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등 임의 증·개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	② 어선 서류 미비치 및 표시사항 위반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선내 미비치 - 낚시어선의 복원성 승인 여부 및 복원성 자료 미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3인 이상 낚시어선 및 배의 길이 24m 이상 어선에 한함 - 어선 검사증서 미비치 - 선명, 선적항, 어선번호판 등 은폐·변경 및 미표시(미부착)
	③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고장(분실) 미신고 등
	④ 어선설비기준 개정에 따른 현장이행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재예방을 위한 10톤 이상의 어선에 화재경보기(단독경보형감지기) 설치 의무화 및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규정(10년) - LPG용기 관리를 위해 발화원인 산소절단기와 2m이상 이격하도록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축전지, 전선 및 전열설비기준의 최신 한국산업표준(KS)을 기준에 반영 - 어선의 위치관리 강화를 위해 위치발신장치(D-MF/HF)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존 장치보다 통달거리가 길고(100→1,500km), 상시전원장치가 포함됨 - 사고 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10톤 이상 어선의 선원실에 조난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(이전 조타실만 설치)

3 서해안 연·근해 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

□ 개 요

- 단속기간/해역 : 2021. 7. 1 ~ 7. 31 (1개월) / 서해일원
- 단속목적 : 멸치 등 어린물고기 보호 및 우심해역 불법어업 근절
- 단속방법 : 육·해상 합동단속반 운영(어업관리단, 지자체, 수협, 해경)
- 중점 단속사항
 - 무허가, 금지기간·체장 위반*, 어구·어법 위반, 조업구역 위반, 허가제한 위반, 어선법 위반, 어업자협약 이행점검 등
 - * 7월 금지기간 : 근해형망, 연안개량안강망, 구획(장망류) 어업금지, 세목망 사용금지 등
 - ** 7월 금어기 : 갈치, 참조기, 꽃게, 주꾸미, 낙지(경인, 전남 6.21.~7.20.) 등

4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

□ 주요 점검사항

- (어구사용) 비어업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어구를 제외한 어구(잠수용 스쿠버장비 등)로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행위
 - * 투망, 쪽대, 반두, 4수망, 외줄낚시, 가리, 외통발, 낫대, 집게, 갈고리, 호미, 손
 - *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8조제2항(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의 제한)
- (포획·채취)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·구역 및 금지체장 위반
 - 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(포획·채취등의 금지), 「내수면어업법」 제21조의2(포획·채취 금지)
- (유통·판매)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목적 저장·운반 또는 운반하는 행위
 - *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7조의2(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등의 금지)

5 새만금호 주변 불법어업 단속

□ 주요 점검사항

- 새만금호 배수갑문 개방 확대에 따른 새만금호내 어선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지도·단속(새만금개발청 주관)
- (새만금호) 내측 어업행위,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등
 - * 「내수면어업법」 제9조(무허가), 제11조(미신고)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4조(불법어구 적재), 제17조(불법어획물 판매 등),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(낚시통제구역)

6 내수면어업법

□ 주요 점검사항

- 유해어법(폭발물, 유독물, 전류 등) 이용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- 무면허, 무허가 어업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- 불법어구* 이용 포획·채취 등 유어질서 위반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*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(가솔린, 디젤, 전기모터 등의 동력장치가 부착된 보트), 잠수용 스쿠버장비, 투망, 작살류,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
- 포획금지 기간·구역·체장 위반 :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<포획금지 체장>

품명	다슬기	쏘가리	참개·동남참개	뱀장어	산천어	송어	황복	말조개
체장(cm)	1.5이하	18이하	5이하	15이상~45이하	20이하	12이하	20이하	9이하

* 기수재첩 : 섬진강 각장 1.2cm 이하,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.5cm 이하

7 낚시관리 및 육성법

□ 주요 점검사항

- (낚시터) 무허가·무등록 영업, 허가·등록기준 미충족,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명령 거부 또는 기피, 전문교육 미이수, 출입검사 거부 등
- *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10조(허가), 제16조(등록), 제14조(허가기준), 제19조(등록기준), 제16조(영업 표시물 제거·삭제), 제22조의2(안전 조치명령), 제47조(전문교육), 제50조(출입·검사)
- (낚시어선) 불법영업 및 낚시어선업자·이용객 안전 준수사항 위반 등
- *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25조(신고), 제29조(의무), 제33조(출입항, 승선자명부), 제34조(출항제한), 제35조(조치명령), 제36조(낚시객 준수사항), 제38조(안전성 검사), 제47조(전문교육), 제50조(출입·검사)
- (공통사항) 낚시어선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
- * 마스크 착용, 발열·호흡기 증상 점검, 손소독제 비치, 거리두기 등

8 면세유류 부정유통 사후관리

□ 주요 점검사항

- (점검대상) 관리기관(농협), 주유소(직영·공급대행), 공급대상 선박·시설·기기
- (주요내용) 「조세특례제한법*」을 위반한 면세유류 관리·공급 및 사용행위
 - (농협)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에 대한 관련 절차 규정 준수 여부
 - (주유소 등) 착색 유무, 출·재고량 일치여부, 양수 및 감면세 부당 편취 등
 - (어업인) 부정 수급·사용, 공급중단(카드해지) 및 신고사항 변동사유 유무 등
 - (수사의뢰) 수산물거래실적 허위작성·제출을 통한 면세유류 부당수령
- *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(부정사용), 제10항(변경신고), 제11항(관리부실), 제12항(부정환급, 양도·양수), 형법 제347조(사기)

9 총허용어획량(TAC)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('20.5.1)

- (추진 배경) 엄격한 총허용어획량(TAC)과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단체에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
- *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45조의3 제5항부터 제7항, 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
- (대상 단체)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,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
- (사업 기간) ~ '22. 4. 30.까지
- (주요 내용)
 - 해양수산부에서 공고로 제시한 필수조건과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한 선택조건 등 준수를 전제로 규제완화 적용

< 시범사업 개요(단체별 주요 사업계획 및 규제완화 적용사항) >

단체명	TAC	선택조건(자율규제 조건)	규제완화 적용사항
경인북부수협 (연안개량안강망 49척)	2,695톤	CCTV 설치(30일 보존) 어구사용량 축소(5통→1통) 조업구역 제한(경인해역 일부 구역) 자율휴어(7.1~8.20)	세목망 3개월 (8.21~11.18) 사용 허용
서해안근해 안강망연합회 (근해안강망 114척)	89,270톤	CCTV 설치(실시간전송·30일 보존) 자원보호(곤쟁이 등 어획감소 노력) 자율휴어(2.1~2.28)	①어류분류망 변형 허용, ②중간세목망 사용 허용*

* 「수산업법시행령」 제45조의3 제2항 및 [별표3의3]에 따라 어구사용 금지기간에는 세목망(중간세목망 포함)을 사용할 수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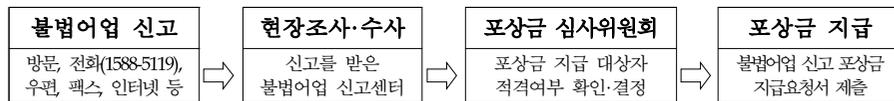
10 기타

1) 어업분쟁 조정

- “어업분쟁”이란 어업·지역 간의 조업 및 어구·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활동에 관한 분쟁
- “조정”이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와 화해·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
- “조정신청”은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, 전화 및 팩스로 가능
* 전화: 061-240-7979, 팩스: 061-240-7978

2) 불법어업 신고 안내

- 불법어업 신고전화 : 1588-5119
- 불법어업 신고포상금
 - (신고 대상) 수산업법, 수산자원관리법, 어업자원보호법, 어선법, 내수면어업법, 양식산업발전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*
 - * 무허가·무면허 조업,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(공조조업),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, 어구의 과다사용,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, 불법 어획물 유통·판매 등의 행위자
 - (신고 방법) 방문, 전화(1588-5119), 우편, 팩스, 인터넷(국민신문고 등)
 - (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)



- (포상금 지급금액) 포상금액 한도 내
- 사건처리신호등 운영
 -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검거한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의 현재 사건 처리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는 시스템
 - 서해단 홈페이지 → 정보공개 → 사건처리신호등* 게시판에 사건처리 진행 현황 공지
 - * (● : 사건접수 → ● : 관할 검찰청 이송(송치) → ● : 처리완료)

3) SNS(카카오톡) 홍보 공간 운영

- SNS를 활용한 수산 정책 및 불법어업 사전 예고제 안내
 - *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홍보 공간 마련
 - (대상)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
 - (방법) 카카오톡에서 키워드 검색* → ‘친구추가’
 - * 키워드 : 서해어업관리단
 - (주요내용) 수산 정책 및 불법어업 사전예고제 등
 - 동·서·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사전예고 안내
 -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등 정보 공유
 - 수산관계법령 재·개정에 관한 사항
 - 불법어업 제보 방법 등 안내
 - 어업관리단 소개 등

붙임 1

7~8월 주요 포획 금지 어종

어종	금지체장	금지기간	비고
갈치	항문장 18cm (20% 미만 포획·채취 시 제외)	7.1~7.31 (북위33도 이북 한정)	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. 다만,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감태 검둥감태		5.1~7.31	다만, 제주도 1.1~12.31.
개서대	26cm	7.1~8.31	
곰피		5.1~7.31	
꽃게	6.4cm	6.21~8.20	연평도·백령·대청·소청도 주변어장 및 대청도어선 어업구역은 7.1~8.31
낙지		6.1~6.30	인천, 경기, 전남(6.21~7.20), 경남 6.16~7.31 충남 가로림만 내측 (4.1~5.31)
닭새우	5cm	7.1~8.31	
대게류	9cm	6.1~11.30	
대문어	600그램		
대황		5.1~7.31.	
뜸부기		8.1~9.30	
말취치	18cm	5.1~7.31.	다만, 정치망어업,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.1~7.31.
명태	-	연중포획금지	-
백합	각장 5cm	7.1~8.20	
붉은 대게		7.10~8.25	단, 강원 연안자망 6.1~7.10
새조개		6.16~9.30	다만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, 전라남도 (무안과 영광군 제외) 및 제주도는 6.1~9.30까지
옥돔		7.21~8.20	
전어		5.1~7.15.	다만, 강원 및 경북 제외
주꾸미		5.11~8.31	
참문어		5.16~6.30	전남·경남 고시 : 5.24~7.8.
참조기	15cm	7.1~7.31	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(유동성그물)을 사용하는 경우 4.22~8.10까지. 다만,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 포획·채취하는 경우 제외
참홍어	체반폭 42cm	6.1~7.15	
키조개	각장 18cm	7.1~8.31	금지체장은 부산, 울산, 강원도, 경북, 경남산에 한정
펼닭새우	10cm	6.1~8.31	-
해삼		7.1~7.31	

붙임 2

안전하고 건전한 수산물 채취 홍보 포스터

모두가 공존하는 즐거운 바다활동

건전하고 안전한 해루질 문화를 만들어요

해루질 활동자의 수산물 채취 당부사항

1

바다는 우리 모두의 공간,
필요한 만큼만 채취해요

2

채취한 수산물의
판매거래는 안돼요

3

스쿠버 장비와 불법어구는
사용하지 않아요

4

야간 수중활동 시
안전규정을 준수해요

해양수산부